韓國의 自然保護 政策에 關한 小考(完)

—均衡的 開發의 生態學的 接近—

閔 庚 玹※

<目 次>

Ⅳ. 對 策
1. 保護와 開發의 均衡을 위한 接近
1) 開發計劃에서의 生態學的接近
2) 自然要素의 生態學的評價
2. 先進諸國의 自然保護施策과 그 敎訓
1) 先進諸國에 있어 保護施策의 動向
2) 日本의 「自然環境保全法」의 背景과 槪要
3) 西獨의 自然保護 및 「景域保有」
3. 自然保護政策의 方向
1) 都市化에 있어서의 自然保護
2) 새 時代의 林政施策
3) 開發綜合計劃과 自然保護
Ⅴ. 結 論
參考文獻

Ⅳ. 對 策

1. 保護와 開發의 均衡을 위한 接近

1) 開發計劃에서의 生態學的 接近

開發途上國의 경우 開發이냐 保護냐의 選擇的 槪念에서 自然與件을 無視한체 物量生産的開發에 치우친 나머지 自然界의 生態的 秩序의 破壞로 많은 問題點을 남기고 있다. 最近 先進國에서 自然의 保護와 利用面의 調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觀念的이거나 抽象的인 景觀上의 調和에 그치는 傾向이 있어 아직 計劃論的 標準으로서의 槪念을 갖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는 國土의 綜合開發을 活潑히 推進하여야할 立場에서 從來와 같이 自然條件을 度外視한 卓上計劃의 拙作을 되풀이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여기에서는 모든 開發計劃을 樹立할 때 基本的인 接近方法으로서의 다음 두가지 問題를 愼重하게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社會現象의 動向이나 趨勢를 基礎로하여 將來를 豫測하고 이에 相應되는 計劃을 策定하는 態度이다. 具體的으로 말하자면 觀光客의 增加傾向, 여기에 따른 自動車의 增加量을 基調로 한 宿泊施設의 增設計劃이나 駐車場의 整備計劃을 綜合的으로 誘導해 가는 態度를 말한다.

둘째, 自然要素를 尊重하면서 計劃을 策定하여야 한다. 우리 눈에 같아 보이는 自然景觀이라 할지라도 局部的으로 種類가 다를뿐 아니라 많은 生物集團이 모여 하나의 生態系를 이루어 共存하고 있기 때문에 그 一部를 開發하고자 할 때에는 計劃地域의 自然狀態를 具體的으로 調査分析하고 評價하여 開發과 保存의 共存的인 戰略目標를 세운다음 開發의 許容限界 絶對的保護區域과 施設計劃地域의 位置와 規模 道路開發루트等을 決定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計劃方法은 L.Mchard의 「Design with nature」에서 强調되고 있어 最近 많은 注目을 끌고 있다.

※ 建設部國土計劃調査研究團計劃委員
(文公部文化財專門委員)

自然을 開發利用하는 過程에서 自然을 復元한다는 것은 오랜 時間과 많은 費用이 所要될 뿐 아니라 生物社會의 有機體的環境을 破壞하거나 國土保全上 많은 副作用을 갖어올 憂慮가 있기 때문에 모든 開發計劃의 初期段階에서 自然與件을 尊重할줄아는 計劃姿勢가 時急히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2) 自然要素의 生態學的評價

自然의 保存은 勿論 均衡있는 國土開發을 推進하기 위한 接近方法으로서 「自然要素의 評價」는 가장 合理的手段이며 모든 計劃策定上의 基本을 이루게 된다.

大自然은 多樣하고도 複雜한 많은 要素들의 有機的인 複合體이기 때문에 그 價値를 正確하게 斷定한다는 것은 거이 不可能한 일이다.

다만 槪略的인 立場에서 「自然」을 把握하고 評價하려면 自然의 價値를 表示할 수 있는 「自然要素」의 綜合的인 檢討 分析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自然要素의 評價는 두가지 方法이 있다.

첫째, 自然이 複雜多樣하기 때문에 이를 把握하려면은 可能限 많은 要素를 取擇하여 評價分析하는 方法으로 이때 社會的 人文的 要素도 함께 評價된다.

둘째, 「複雜한 自然」일수록 그 複合的인 影響下에 形成된 植物社會(植生)의 類型化等으로 表現 되는 것과 같이 「가장 單純하고 代表的인 要素의 抽出 및 그 組合」에 依해서 分析·評價가 可能하다는 立場이다.

이 境遇 自然要素를 몇개의 段階로 分類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例를 들면 「植生」이란 自然要素는 下位水準의 氣候·土壤·動物·地下水·高度 等의 諸要素가 個別的으로 或은 相互聯關되어 決定된다.

이들 關聯要素는 다시 그 下位水準의 構成要素로서 「氣候」를 例를 든다면 氣溫 溫度 雲量 降水量 地溫 日照 蒸發 日射 氣壓等의 細部要素에 依해 構成되고 있다. 이와 같이 「自然」을 把握하기 위하여 「植生」이란 「自然要素」를 擧論하므로서 實로 많은 因子를 包含하여 判斷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한例로서 自然을 把握하기 위해 「植生」을 自然要素로 들었으나 이는 그 計劃을 實施할 경우에 「植生」을 頂點으로 한 「피리밑트」에 包含된 要素群이 該當計劃에 미치는 影響이 크고 많은 比重을 갖는 것이라고 判斷되기 때문이며 該當計劃의 目的內容如何에 따라 選擇될 自然要素의 內容도 달라지게 된다.

以上 「自然」을 「自然要素」의 分析에 依하여 評價할 때 두가지 方法이 있다는 것을 說明하였으나 理解를 돕기 위하여 모델化 하였다. 別圖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然」의 實體는 左右의 적은 円으로 表示된 「自然要素」의 分析·評價에 依해서 把握할 수 있다. A의 境遇는 數많은 因子의 重合에 依한 方法이며, B는 計劃目的에 合致되고 自然特性을 充分히 反映할 수 있는 2~3個 因子의 重合에 依한 方法이라 할 수 있으며, 自然景勝地에 關한 data가 不足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後者(B)가 有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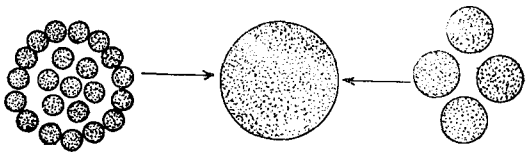

A方法 實體로서의 自然　　B의 方法

〔圖 4〕 自然要素의 分析方法의 모델

前者의 方法에 依한 「自然要素」의 例示로서 自然地理學的決定論을 標榜하는 Lan L.Machard의 두가지 事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地質 ② 地盤 ③ 高浸食性 ④ 表面排水 ⑤ 地中排水 ⑥ 傾斜 ⑦ 事業的 價値 ⑧ 野生生物保存 ⑨ 山林 ⑩ 水資源的價値 ⑪ 住宅地域으로서의 價値 ⑫ 레크리에이숀的價値 ⑬ 美觀 ⑭ 地價 ⑮ 歷史的價値 ⑯ 滿潮時범람

① 地形 ② 地價 ③ 住宅資質 ④ 레크리에이숀 價値 ⑤ 水資源價値 ⑥ 自然地理學的障害 ⑦ 歷史的價値 ⑧ 農業的價値 ⑨ 天然動植物의 價値 ⑩ 景觀的價値 ⑪ 浸食의 影響 ⑫ 都市化現象 等을 들 수 있다. 또한 計劃의 性質은 若干 다르나 Phillip H. Lewis의 레크리에이숀 計劃時의 景觀資源分析에서는 8個 구룹 220가지의 資

源分類를 하고 있다.

① 水資源等(34分類) ② 濕地資源等(7分類) ③ 地形的資源等(23分類) ④ 植生資源(15分類) ⑤ 歷史的·文化的資源等(35分類) ⑥ 考古學的資源等(37分類) ⑦ 野生動物(58分類) ⑧ 旅行者서비스施設等(9分類)

以上 兩者의 「自然要素」의 選定事例를 들었으나 어느 것이나 前者의 方法에 依한 問題點 즉 抽出要素가 別圖 中央部에 表示한 實體로서의 自然인 圓形을 充分히 메꾸기 어렵고 더욱 어느 部分은 2重 3重으로 各要素가 겹쳐 評價되는 問題點이 있다.

끝으로 各要素의 評價와 綜合評價를 할 때의 「要素」別 比重에 對해서 前者와 後者 어느 方法이든 評價過程에서 各要素別로 採點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重要한 點은 各要素間의 比重에 差를 둘 境遇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各要素間의 價値의 差를 證明할 수 있는 客觀的인 基準은 없다는 點이다. 따라서 計劃上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要素를 특히 높게 評價하는 것이 一見 合理的인 것 같이 보이나 評價結果의 妥當性을 左右할 可能性이 있어 特히 前者에 依存할 경우 이 點을 留意하여야 하며 可能限 많은 要因들을 評價하므로서 客觀性을 얻게 될 것이다. 다만 評價要素가 自然을 把握함에 不充分한 數이거나 全體의 均衡에 問題가 있을 때에는 關聯要素의 比重에 差를 두어 이를 補完하는 方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後者의 方法을 利用할 때에는 그 客觀性을 높이는 前提로서 計劃目的에 合致된 評價要素의 選定을 올바르게 하여 妥當性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이點의 明確한 理論例가 今後 남겨진 課題이기도 하다.

2. 先進諸國의 自然保護施策과 그 敎訓

1) 先進諸國에 있어 保護施策의 動向

우리는 汎地球的인 『環境時代』에 直面하고 있다.

이 地球上에 生物이 發生한 것이 約 30億年前이라 한다면 生物社會의 一員인 人類의 歷史는 겨우 15萬年에 不過하다. 여기에 30億年을 1年 365日로 縮少시켜 人類의 歷史를 比較하면 한해의 마지막날인 12月 31日의 23時 33分 14秒에 人類가 태어난 꼴이되며 그해의 마지막 數秒동안에 人口가 爆發的으로 增加되여 都市化와 産業化가 이루어진 셈이된다.

이와 같은 現實속에서 自然環境의 保全問題는 先進國만이 苦惱은 아니며 全地球的인 問題로서 「스톡호름」의 國聯 「人間環境會議」에서 採擇한 UN의 「人間環境宣言」이 이를 端的으로 잘 表現하고 있다.

自然保護의 歷史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다르다 일즉히 文明이 發達된 歐羅巴에서는 肉食에서 오는 放牧農業이 盛行되여 18世紀中葉頃 많은 森林이 破壞되고 土壤浸食 等으로 國土가 荒廢되자 英國을 爲始한 歐羅巴의 여러나라들이 協力하여 自然의 復元과 保全에 注力하여 왔다. 獨逸에서는 1970年 英國의 風景式庭園思想을 發展시켜 自然風景式公園計劃이 처음으로 出現하였으며 1904年에는 天然記念物을 指定保護하게 되었다.

美國은 18世紀中葉 大陸을 開拓하면서 歐羅巴에서와 같은 自然破壞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生態系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廣大한 原始地域을 開拓 初期에 指定하여 國立公園이나 레크리에이숀을 위한 自然保護區域 學術研究를 위한 原生保存地域등을 保存하고 森林의 多目的利用과 永續的生産을 强化하는 이른바 Conservation에 立脚한 自然保護思想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美國의 自然保護政策의 基本哲學은 短期眼目的인 立場이 아니라 長期的觀點에서의 自然環境保護와 生活環境의 質을 높이는데 있다 이와 같은 事實은 1976年 大統領이 議會에서 行한 環境白書에 依해서 「制限된 自然資源을 有用하게 利用하고 이들의 副産物인 여러가지 公害를 最少化함으로서 自然環境의 破壞를 未然에 防止하는 生態學的 槪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 內容에서도 明白하게 立證할 수 있다.

旣述한 바와 같이 歐羅巴여러나라의 自然保護運動은 産業改革에서 오는 自然의 急速的인 破壞와 그 反作用으로서 荒廢된 國土의 復元에서 始作되였으나 美國은 前者와 달리 資源保護와 利用面의 均衡을 위한 事前豫防的 目的에서 推

進되였다는 點이 根本的으로 다르다. 日本의 境遇는 1910年 歐美의 自然保護思想이 導入되여 1918年 史蹟名勝天然記念保存法이 1931年에는 國立公園法이 制定되여 自然의 保存에 力點을 두고 있다.

世界에서 가장 人口密度가 높고 原生林은 勿論 自然植生을 보기 힘든 程度로 自然이 開發되여 버린「오란다」에서도 國民의 健全한 生活의 保障으로서 自然保護에 全力을 기울리고 있으며 專門的인 自然研究機關인 王立自然保護研究所(RIVON)를 갖고 있다.

佛蘭西에서는 1960年 國立公園法이 制定되였고 1976年에는 自然保護法이 制定되였다. 英國의 動物愛護의 本山으로 自負하고 있는 國家로서 鳥類保護法 바다표범保全法 오소리法 사슴法等 個別立法에 依해서 自生動物의 保護를 圖謀하여 왔으며 1975年에 野生植物을 追加해서 包括的으로 保護할 수 있도록 野生動物 및 野生植物保全法(Conservation of wild creatures and wild plants Act)으로 發展시켰다. 또한 19世紀末 英國의 辯護士, 牧師, 婦人運動家에 依해 設立된 自然保護團體인 「내쇼날 트러스트」는 1964年에 海岸線買入 運動을 벌려 海岸線 560km와 14萬ha의 土地를 買入保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自然保護運動은 世界各國에 波及되여 日本에서는 觀光資源保護財團을 設立하여 觀光資源을 買入保全하는 運動이 展開되고 있다.

自然保護의 새로운 움직임으로서 人工衛星技術의 自然環境保全에의 應用이 試圖되고 있으며 開發을 抑制하거나 調節하기 위한 手段으로 宅地造成이나 採鑛, 採石時 環境開發稅를 負課하거나 自然公園等의 利用者 負擔制를 採擇한 나라가 늘고 있다. 從來의 開發型 都市計劃의 失敗를 反省하여 새로운 都市計劃에서는 環境事前評價制를 採用하고 있으며 이 以外에도 그나라 固有의 生物資源의 保全과 特殊景觀의 永久保存 및 環境資源의 淨化運動이 國際間의 協力에 依해서 試圖되고 있다.

以上은 先進國에 있어 自然保護施策의 一面을 다룬데 不過하며 우리나라 自然保護政策面에 活用할 수 있는 先進國의 敎訓的事例分析을 위하여 西獨의 自然保護施策을 發展段階別로 分析하고 우리나라와 立地 및 社會的與件이 비슷한 日本國의 自然環境保全法의 背景과 槪要 等을 別項에 따로 論議하기로 한다.

2) 日本의 自然環境保全法의 背景과 槪要

(1) 法制定의 背景

日本의 自然環境은 亞熱帶에서 寒帶에 걸쳐 있어 生物相이 多樣하며 四季節이 보여주는 自然의 變化美가 特히 아름다워 日本國의 文化와 國民性에 많은 影響을 주어 왔다. 그러나 最近 都市化의 進展과 國土開發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그나름 變遷을 가져오게 되어 自然環境을 어떻게 保全하느냐는 重大한 國民的 課題로 登場되고 있다. 이와 關聯된 既存의 自然保護法制를 살펴보면 自然公園法,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近畿圈의 保全區域의 整備에 關한 法律, 都市計劃法(風致地區), 古都의「史的風土의 保存에 關한 法律, 山林法, 文化財保護法 等 많은 法이 있으나 自然保護를 直接的인 目的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法律의 性格上은 勿論 地域的으로도 여러가지 內容的 限界性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問題點은 1972年 法律第85號로서 自然環境保全法이 制定되므로서 環境保全을 綜合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法的인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本法制定의 意義는 첫째, 原生의 自然環境에서 都市周邊의 自然環境에 이르기까지 一貫性있게 保全對策을 세워나갈 수 있는 制度的인 뒷받침이 마련되었으며, 둘째, 極盛相에 達한 原生의 自然環境을 原狀態로 保全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都, 道府縣의 自然環境保全에 關한 條例施行上의 法的根據를 明確히 하였고, 從來의 法規로써 다룰 수 없었던 自然環境이라 할지라도 保全地域으로서 指定이 可能하게 되었다 넷째, 自然公園審議會, 中央鳥獸審議會를 廢止하고 綜合的 自然環境保全審議會를 設置하므로서 審議體制의 一元化를 期하였다.

(2) 自然環境保全法의 槪要

이 法律은 自然環境保全의 基本理念 其他 自然環境의 保全에 關한 基本事項을 定하고 自然公園, 其他 自然環境保全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과 함께 自然環境의 保全을 綜合的으로 推進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總則을 包含한 全七章, 本則 57條로 構成되어 있으며 第一章의 總則과 第二章의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 및 自然環境保全審議會 規定 等 基本規定과 第三章以下의 地域·地區에 對한 實體法的規定으로 나누어져 있다. 무엇 때문에 自然環境을 保全하느냐를 簡明하게 表現한 것이 第2條(基本理念)로서 自然環境이 健康하고 文化的인 人間生活을 指向한다는 基本理念위에 惠澤享受의 平等性을 後孫에까지 永遠히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풀이 할 수 있다. 基本的이며 總合的인 施策의 策定과 그 實施의 責務를 國家가 지게하고 基礎調査의 實施(第5條), 科學技術의 振興(第6條), 國民의 理解를 求하기 위한 措處(第7條)를 講究하였으며 第8條에는 地域의 開發整備時 모든 環境評價를 한 後 施行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 또한 地方公共團體, 事業者, 國民各者의 立場에서 自然環境保全에 協力하여야 할 義務를 第9條에서 第11條까지 規定하고 있다. 第2章은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 및 自然環境保全審議會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데 基本法的部分과 實體法的部分을 이어주는 役割을 맡고 있다. 特히 自然環境保全基本方針은 第12條에 列擧된 바와 같이 日本全國의 自然環境을 어떻게 保全하느냐란 基本構想의 策定에서 地域指定의 方法, 自然全園등 他法律에 依해 指定되고 있는 自然環境保全地域과의 配置調整 等 自然環境保全施策의 基本的인 事項을 定하고 있다. 自然環境保全審議會는 政府가 自然環境保全基本方案을 作成할 때 意見을 求하는 것을 비롯하여 本法이 定하고 있는 地域指定時 意見을 陳述하게 된다. 第3章의 第14條에서 第21條까지는 原生自然環境保存地域의 指定과 保存에 對하여 規定하고 있다. 모든 開發行爲에 따라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貴重한 原生自然林을 『原生狀態로 維持한다』는 것은 그 區域內의 動植物地形과 水系狀態 其他 모든 自然要素들이 複合的으로 保存된 狀態를 말하며 이는 自然을 硏究하여 自然法則과 生物種을 發見 이를 人類의 文化와 福祉向上에 寄與하는데 있다.

第4章은 自然環境保全地域의 指定, 保全地計劃의 決定, 保全事業, 保全을 위한 規制와 이에 따른 補償을 規定하고 있다. 自然環境保全地域에 指定要件은 高山性植生 또는 亞高山性植生地域과 天然林이 相當部分을 占하고 있는 森林地域, 特殊地形, 地質이 包含된 地域 水系와 關係되는 地域, 動植物의 自生地와 棲息地 그리고 海域 等 6가지로 區分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資質을 갖춘 모든 地域은 指定하는 것이 아니고 『自然的, 社會的 諸條件에서 보아 必要한 地域』을 環境廳長官이 指定 保全하게 된다.

이와 같은 自然環境保全地域은 特別地域과 普通地域으로 區分되고 特別地域은 自然環境의 特殊性이 認定되어 保全할 價値가 있는 核心地域으로 모든 人間行爲는 許可를 받게 되어 있으며 普通地域에 있어서는 自然公園法의 경우와 비슷하여 一定行爲를 하려면 屆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自然公園法과 다른 點이 두가지 있는데 이는 林業과의 調整과 保安林制度와의 調整問題等이다. 먼저 前者의 境遇 自然公園法에는 林業經營時의 樹木과 伐採와 宅地造成等 他目的에서 行해지는 伐採를 같은 規定으로 묶고 있는데 反하여 本法에서는 兩者를 區分하고 있으며 環境廳長官과 農林大臣이 協議하여 木竹의 伐採方法과 限度는 森林法에 根據된 地域森林計劃과 一致시켜 따로히 許可없이 木竹伐採를 할 수 있도록 調整하고 있다. 後者의 保安林制度와의 調整은 本法第25條에서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는 行爲라도 森林法에 依해서 一但 許可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效力을 認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旣述한 日本의 自然環境保全法의 長點의 하나는 國土의 70%를 占한 林業行政과 密着시켜 相互調整의 妙를 期하고 있는 點이다.

다만 몇가지 問題點을 指摘한다면 保護對象地를 選定하기 위한 基礎調査硏究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며 都市 및 周邊의 自然環境保全策을 施行하는 過程에서 土地買取制度의 確立 補償稅制上의 調整 都市綠地保全制度確立, 公害防止計劃의 補完 自然保護思想의 普及等 後繼處置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西獨의 自然保護 및 景域保育

先進國에 있어서의 自然保護의 發展過程을 살펴 우리의 敎訓을 삼기 위해 獨逸의 自然保護制度를 文獻을 通하여 分析하였다.

自然保護에 立脚한 國土管理의 發展起源은 産

業革命後 18世紀中葉으로 工業化로 인한 自然環境의 破壞가 社會問題로 登場되면서 胎動하였다

初期의 自然保護運動은 人間의 生活周邊에서 始作되었다. 個人의 庭園이나 公園을 造成하려는 움직임이 英國의 W. Kent, H. Repton, L. Brown 等에 依하여 晶導되었고, 1770年頃 英國의 影響을 받아 獨逸 最初의 自然風景式公園計劃이 樹立되었다.

그 後 G. Vorher(1778~1847)에 依해 英國의 風景式思想을 都市計劃과 土地利用計劃에 關聯시킨 綜合的 國土管理의 槪念이 發生되었다. 1822年에는 造園促進協會가 發足되었으며, P.J. Lenné의 指導下에 있는 當協會는 「耕地의 經濟的 裝飾(Ökonomische Aufschmuckung der Fluren)」을 부르짖어 國土造景과 農業技術과의 連携를 부르짖게 되었고, 造園的으로 實施된 保護植栽는 農業分野에 있어서 收穫의 增進과 農民의 生活安定을 가져 왔으며, 他產業을 保護하는 多目的 效果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Vorherr, Lenné를 中心으로한, 國土美化運動은 工業化의 促進과 都市化로 環境衛生上의 問題가 提起되어 鄕土保護, 國家的自然保護運動으로 發展되여 田園都市運動이 活潑히 展開되였고, 1836年 Bonn郊外 Königswiter에 獨逸 最初의 自然保護地域이 指定되었다. 獨逸民族學의 創始者인 W.H. Riehl(1823~1897)은 그의 著書 「獨逸民族의 自然史」(1851)에서 森林 및 原野를 保護함은 크나큰 進陟이며 森林뿐 아니라 버려진 砂丘·濕原·岩石 및 氷河跡等도 耕地에 有益한 補足物임을 强調하여 國土의 開發과 保存의 調和를 바탕으로한 自然保護思想이 널리 普及되었다 여기에서 自然保護 및 鄕土保護運動의 直接的인 契機를 마련하게된 것은 伯林音樂學校敎授인 Ernst Rudorff(1840~1916)이다. 그의 所有地를 政府가 景觀 및 生活環境에 對한 配慮없이 區劃整理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하여 私財로 周邊의 林地를 買入 老巨樹를 保護하고 積極的인 防災植栽를 實踐한데서 크게 刺戟을 받게 되었다.

그 後 Rudorff의 指導下에 獨逸鄕土保護聯盟이 發足(1904)되었고, 1906年에는 國立天然記念物硏究所가 設立되었으며, 縣郡 單位의 天然記念物委員會가 設置되었다.

또한 1905年에는 Egestorf의 W. Bode 牧師가 土地를 買入하여 獨逸 最初의 自然保護公園이 造成되었으며, 1909年 自然保護公園協會가 發足되었다. 이와 같은 自然保護運動과 함께 H. Von Salisch는 「林業은 國土美化의 一部이다」라는 立場에서 森林美學(Forstaschetik)을 普及하고 林業의 主目的은 樹木生產뿐 아니라 國土保全과 레크리에이숀 動物保護를 위해서도 積極的으로 植栽하고 管理하여야 한다」고 强調하여 資源開發과 國土保全에 貢獻한 바 크다.

1919年 制定된 獨逸帝國憲法 150條를 보면 「文化財·天物記念物 및 景域等은 國家의 保護와 管理를 받는다」라고 明示되어 自然保護活動이 처음으로 國家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法的인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 1922年에는 厚生大臣에 依해서 國民의 健康에 關한 河川의 保全과 公開 및 樹林의 保存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었고 1935年에 帝國自然保護法이 制定되었으며 1936年에는 帝國自然保護硏究所가 正式으로 發足되었다.

獨逸의 自然保護의 槪念은 모든 自然現象속에서 自然을 保護·保存하는데 重點을 두고 있으며 自然保護法이 制定된 5年後인 1940年에는 800個所의 自然保護地가 全國에 設置되었으며 天然記念物 50,000件이 指定되었고 1966年에는 6,177個所 33,212km²의 景域保護地(全國土의 13.5%)를 指定 保存하고 있다.

이와 같이 獨逸의 自然保護運動은 產業化初期段階에서 國民의 自發的인 庭園造成과 새마을의 防災林造成에서 始作된 國土美化運動이 鄕土와 天然記念物 保護運動을 거쳐 全國的인 景域保育運動으로 發展되였으며 「綠地秩序」를 最優先한 綜合國土管理體系下에서 開發과 保全의 均衡이 維持된 國土의 綜合開發을 이룩하여 經濟發展과 人間의 福祉를 함께 누릴수 있는 先進福祉國家로 發展시켰다. 이들은 分明히 生物社會의 秩序를 올바르게 認識하고 人間生活에 活用하여 自然과 더불어 共存하고 繁榮한 슬기로운 國民이였다.

우리도 獨逸國民의 自然保護運動을 거울삼아 國民스스로가 내집 내마을의 自然을 造成 保護

하는 自發的인 旗手가 되여 「꽃」과 「새」와 「人間」이 함께 살 수 있는 福祉國家를 建設하므로서 우리의 宿願인 國土 統一을 이룩하는 기름길이 될 것이다.

3. 自然保護政策의 方向

1) 都市化에 있어서의 自然保護

都市의 綠地는 單純한 視覺的美化를 위한 裝飾物이 아니며 「過密都市의 體質을 改善하는 훌륭한 媒介體」이며 「人間을 올바르게 誘導해주는 精神的支柱이며 스승으로서의 機能」을 갖고 있다. 最近 首都서울의 再開發過程에서 現代的인 公園이 늘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多幸스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都市의 綠地는 住宅庭園이나 公園을 비롯하여 모든 公共宅地 近郊保全綠地 生產綠地 및 民間 레크리에이숀綠地等을 總括하는 것으로 都市의 自然保護對策은 法定都市公園과 綠地等 都市計劃分野와 民間의 宅地와 空地 遊園地 農耕地山林等의 土地利用方法에 따른 市民的協助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考慮되어야 한다

都市의 再開發은 既成市街地의 自然保護的 環境改善을 위해 좋은 機會로서 都心地에 있어서는 多目的이며 많은 機能을 함께 考慮한 立體的計劃을 試圖하여 最大限의 綠地를 確保하고 住宅街나 市街內에 既存工場을 地方으로 分散시키고 그 跡地를 公園綠地化한다. 한편 市街地內에 흐르는 河川邊을 連續綠地化하여 漢江과 連結된 步道公園을 造成하므로서 값싸게 많은 綠地를 造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住宅街의 近隣公園의 槪念을 쇼핑센터와 連結한 새로운 多目的利用空間으로 計劃하여 主婦들의 開放的인 近隣關係를 造成하고 새로운 社會問題로 登場되고 있는 老人問題解決을 위한 方案으로 住宅街의 어린이 公園안에 老人들의 놀이터를 겸하는 方案과 既存 學校空地를 活用하는 「學校公園」等을 試圖하여 人工綠地를 늘려나가고 都市計劃區域內에 있는 樹林 草地 岩石地水池 가운데 公害防止와 市街地의 擴散을 防止할 수 있다고 判斷되는 綠地를 保存地區로 指定하고 市街地調整區域인 郊外의 生產綠地 凡致林 運動 및 觀光綠地와 그린벨트를 積極 保全한다.

最近 江南地域에서 造成되고 있는 아파트團地는 漢江邊의 넓고 넓은 山과 平野를 瞬息間에 매꾸워버렸으며 高速道路 바로 옆 空地까지 아파트群이 솟아 오르고 있다. 여기에서 自然保護라는 말을 꺼낼 餘地가 없으며 人間保護라는 表現이 도리어 實感이 날지도 모른다.

道路交通의 發達과 앞으로 닥아올 自家用車의 大衆化는 既成市街地의 交通公害를 加重化할 것이며 都市 近郊野山의 宅地化 現象이 일어나고 이로 因한 自然環境의 破壞가 예상된다.

開發과 自然保護와의 調和는 우리 人間生活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基本課題로서 官主導的規制보다 國民스스로가 能動的으로 解決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現實的으로 서로 相反된 두 要因을 相互調和시키기 위해서 生活環境的側面과 行政的側面에서 段階的인 接近을 試圖하여야 한다 먼저 生活的 側面에서 人間과 自然과의 相互 依存과 發展過程을 歷史的으로 考察하면 다음과 같은 關連性을 찾아낼 수 있다.

種 別	1次的自然	2次的自然	3次的自然
自然의狀態	原始林	自然林+人工	人工林 公園 庭園 街路樹
人間의狀態	原始人	農民, 漁民	都市人

위 表에서 보는 三次的自然은 人間에 依해서 一部 또는 全部가 改良된 二次的自然을 더욱 改良한 것으로 複雜한 都市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自然을 말한다.

開發과 自然의 保護는 人間定住社會와 人間의 行爲에 對應시켜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都市社會속에서 原生林의 保全을 試圖할 수 없는 것과 같이 原生林속에 都市社會를 建設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며 都市에서의 自然保護는 3次的自然의 造成과 保存管理를 積極推進하여야 한다.

한편 行政的側面에서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

아래表의 開發區域은 都市計劃規模의 自然保護를 推進하여야 할 地域으로 地形等 立地條件을 最大限 살리면서 開發計劃을 推進하면서 特殊한 自然景觀이나 樹林帶를 保護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開發地域內에서의 開發의 規模 種類質等

保護規模 / 開發規模	(1次的自然) 特別保護地域	(2次的自然) 保護地域	(3次的自然) 開發地域
國土計劃	▨		
地域計劃		▨	
都市計劃			▨
	都市計劃 區域外	調整地域	市街地化區域
		都市計劃區域	

은 目的과 機能 周邊與件 投資效果 都市美觀 人間生活空間의 尊嚴性을 勘案하여 安全하고 快適한 生活環境이 維持될 수 있는 範圍內에서 行政的으로 强力하게 規制하고 最大限의 自然綠地를 保全하도록 하는 自然環境評價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새時代의 林政施策

農林業은 自然의 힘에 依存하여 發達되어 왔으며 科學이 아무리 發達된다하드라도 永遠히 自然에 依存되어야 하며 다른 資源과 달리 再生産이 可能하고 森林의 多樣한 公益的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에 國家經濟面에서 뿐 아니라 社會福祉面에서도 가장 重要한 國家의 基幹産業에 屬한다. 지난 30年間 汎國民的인 山林綠化事業으로 우리周邊山林이 많이 푸르러졌으며 國民의 認識도 漸次 높아져 森林의 生産資源으로서의 重要性 못지 않게 環境資源으로서의 社會福祉的 要請이 높아지고 있으며 自然保護上 重要한 意義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環境資源으로서의 社會的要請을 살펴보면

(1) 水資源涵養機能에의 期待

生活의 都市化와 工業化에 따른 물의 需要가 急增되고 있으며 水資源의 有無는 地域經濟社會의 發展을 制約하는 主要因이 되고 있다.

우거진 森林의 경우 地表水로서 흘러내리지 않고 땅속으로 서서히 移動하여 河川流量을 調節하기 때문에 많은 費用을 投入하여 댐을 막은 것과 같은 效果가 있을뿐 아니라 農業用水로 쓸 경우 植物生育에 알맞는 狀態의 기름진 물을 供給함으로서 冷害나 病虫害와 같은 危害가 減少하여 增産이 可能하고 淡水魚를 비롯 많은 生物의 棲息處로서의 內水面을 擴大시키는 一石三鳥의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森林의 水資源涵養機能의 經濟的效用을 金額으로 評價한다면 年間 6千億원 以上에 達한다는 事實도 잊어서는 아니된다.

(2) 土砂流出 및 山砂崩壞防止機能의 期待

우리나라 山林面積의 77.0%가 25°以上의 傾斜가 急한 地形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大部分의 土壤의 花崗岩과 片麻岩으로 形成되여 荒廢하기 쉽고 年降雨量의 大部分이 夏節에 集中되기 때문에 年間 土砂流出量만도 31,801,461톤(1日 17,500臺의 5톤추럭으로 1年間繼續運搬하여야 할 土量임)이라는 엄청난 土砂流出現象이 일어나게 되여 河床과 農耕地는 勿論 많은 産業施設을 埋沒시키고 바다를 메우게 된다.

(3) 野生鳥獸保護機能의 期待

森林은 가장 高度化된 自然生態系의 하나로서 野生鳥獸 棲息處로서의 機能을 훌륭하게 遂行하고 있으며 複雜한 連鎖關係下에 있는 生態系는 人間環境으로서도 가장 安全하고 快適하다는 事實을 우리는 體驗을 通하여 잘 알고 있다.

(4) 保健休養機能에의 期待

高密度都市生活에서 오는 不斷의 緊張과 스트레스解消의 慾求度가 높아지고 있으며 所得水準向上과 餘暇時間의 增大에 따라 屋外 레크리에이션的 需要가 크게 增大되고 있다. 特히 自然의 품속에서 心身을 休養하려는 自然指向的 傾向이 最近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우거진 森林은 人間의 自然指向慾求를 充足시키는 最上의 것으로 公益的機能이 森林의 物理的作用에 由來되는데 反하여 保健休養의 機能을 森林에 接하는 人間의 感性的要因이 주로 作用하며 이들은 人類文化의 根源을 이루고 있다.

(5) 騷音防止機能에의 期待

우리 生活環境속에서 가장 不快한 것의 하나는 交通騷音을 비롯하여 工場에서의 騷音公害로서 都市뿐 아니라 農村地帶까지 擴散되고 있다. 森林의 騷音防止機能은 매우 큰 것으로 騷音波動의 에너지가 숲을 이루고 있는 줄기, 가지, 잎에 依해서 遮斷消失되어 좋은 防音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6) 其他公益的機能에의 期待

以上은 森林의 重要한 機能만을 들었으나 大氣의 淨化, 防風, 防雪, 防火, 防塵, 濕度調節을 비롯 夏期의 氣溫上昇, 冬期의 氣溫降下를 緩和 等 環境保全上 이들 効用은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森林에 對한 社會의 期待가 木材生産이라는 直接的 効用과 함께 公益的機能을 重要視하게된 것은 環境改善과 새로운 價値觀을 確立하려는 現代人의 社會的要請에 依한 것으로

〔表 2〕 林相現況(75現在)

總林野面積 6,641千ha (單位：千ha)

針葉樹林 3,211 (54.0%)	立木地 5,930(千ha) (89.0%)	無立木地 703 (11.0%)	未立木地 300 (42.0%)
			荒廢地 20 (3.0%)
濶葉樹林 1,038 (18.0%)			
混淆林 1,676 (28.0%)			開墾火田 245 (35%)
竹林 5	未調査 8		除地 138 20.0%

〔圖 5〕 山林의 傾斜度別面積(78.1)

(單位：千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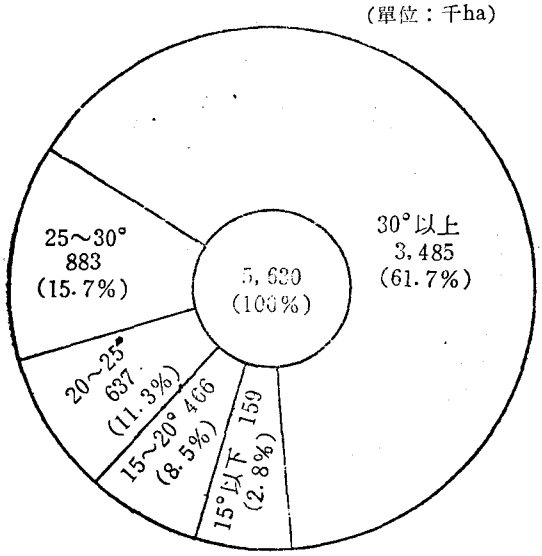

山林廳山林資源調査研究所

環境資源으로서의 山林保護의 重要性을 다시 한번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人口增加에서 오는 土地의 量的需要와 土地利用의 質的變化가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아 現在 國土面積의 66%를 占하고 있는 山林面積은 漸次 減少되어 2000年代에는 國土面積의 約 50%線에 이를 것으로 豫想된다.

圖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傾斜度 25°以下의 緩傾斜地를 農耕地(草地, 果樹園) 宅地 및 産業用地로서 轉用된다고 假想할 때 山林面積의 縮少와 더불어 與件이 不利해진 急傾斜地에서 木材를 위시한 各種林産物을 生産하여야 하고 環境資源으로서의 社會的 要請을 同時에 充足시켜 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傾斜度에 依한 劃一的인 國土利用區分은 止揚되어야 할 것으로 그 對備策으로서 山地利用區分이 하루 速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土地의 利用區分作業은 立地條件 植存植生 그리고 社會 및 經濟的與件 等을 勘案하여 國土利用의 均衡이 維持될 수 있도록 綜合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一般的으로 土地分類와 土地利用區分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山帶, 自然公園(國立公園), 天然記念物, 學術研究林과 같이 民族的 遺産으로서의 土地利用, 保安林, 自然步道, 그린벨트, 森林公園 自然休養林과 같은 環境保全 및 餘暇空間으로서의 土地利用, 農耕地나 山林, 都市工業用地等 産業基盤으로서의 土地利用等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山地의 利用區分은 一般林業地帶(林産物生産專用地帶), 國土保全森林地帶(例, 保安林), 環境保存森林地帶(例, 自然公園風致林), 法定保存森林地帶(學術研究林이나 原始林)等 自然的與件과 社會的與件에 맞게 山地利用區分圖를 作成한다.

앞서 前提한 바와 같은 急傾斜地에서 林産物의 增産과 社會公益的機能을 强化하여야하는 立場에서 林政施策의 基本目標를 「廳山地의 多目的利用을 위한 生態學的 營林」으로 轉換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山地를 機能과 目的에 一般林業地帶 國土保全森林地帶 環境保全森林地帶 法定保存森林地帶로 區分한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各

〔表 3〕

土 地 利 用 區 分 體 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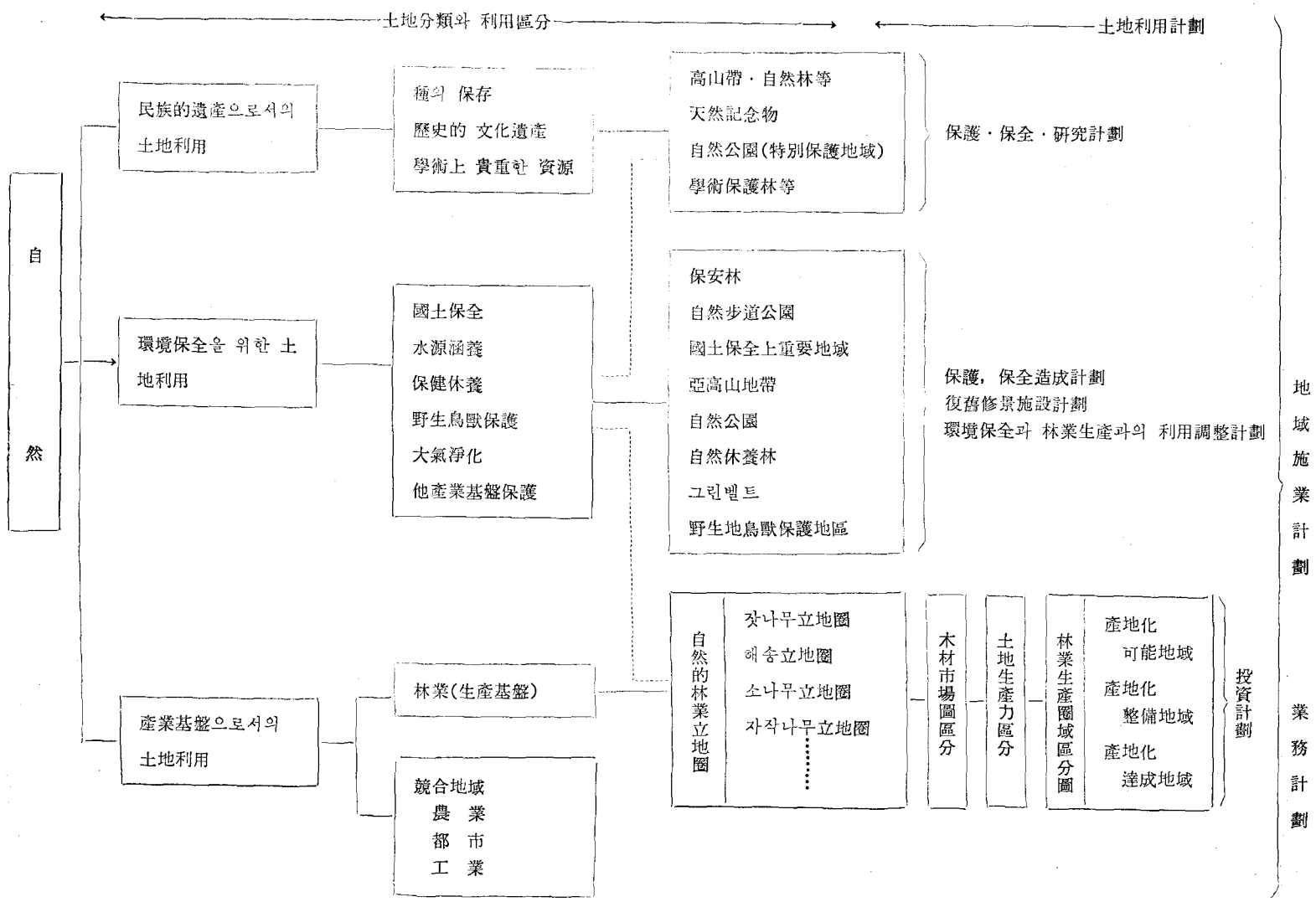
土地分類과 利用區分
土地利用計劃
自然
民族的遺產으로서의 土地利用
種의 保存
歷史的 文化遺產
學術上 貴重한 資源
高山帶·自然林等
天然記念物
自然公園(特別保護地域)
學術保護林等
保護·保全·研究計劃
環境保全을 위한 土地利用
國土保全
水源涵養
保健休養
野生鳥獸保護
大氣淨化
他產業基盤保護
保安林
自然步道公園
國土保全上重要地域
亞高山地帶
自然公園
自然休養林
그린벨트
野生鳥獸保護地區
保護, 保全造成計劃
復舊修景施設計劃
環境保全과 林業生產과의 利用調整計劃
產業基盤으로서의 土地利用
林業(生產基盤)
競合地域
農 業
都 市
工 業
自然的林業立地圈
잣나무立地圈
해송立地圈
소나무立地圈
자작나무立地圈
木材市場圈區分
土地生產力區分
林業生產圈域區分圖
產地化 可能地域
產地化 整備地域
產地化 達成地域
投資計劃
地域施業計劃
業務計劃

地帶別 特殊性에 맞는 科學的인 施業 및 管理規程을 法制化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적은 費用으로 많은 林產物을 生產한다는 人間本位의 短期的인 經濟性에 치우친 나머지 大團地造林, 秋風嶺式伐採 等 單純한 皆伐型의 農業的方式을 擇하여 왔기 때문에 造林成果가 매우 不振하였으며 成功한 경우에도 많은 問題點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는 立地的 與件이 人工造林에 有利한 곳이라 할지라도 從來와 같은 大面積皆伐을 止揚하여(生物社會의 秩序에서 紹介한 日本의 吉野林業事例參照) 小規模로 줄여야 하며 急傾斜地의 境遇에는 周圍에 保護樹를 남기는 非皆伐群狀造林이나 周圍에 保護樹帶를 남기는 小面積皆伐式의 「細胞膜式造林」 方法을 採擇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서 生產過程에서의 能率的인 勞動手段과 勞動의 安全性이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機械化에 있어서 小規模 自走式과 勞動安全性이 높은 「리모콘化」가 同時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林政施策上 가장 重要한 當面課題는 전山林面積의 $\frac{1}{2}$以上을 찾이하고 있는 소나무林을 어떻게 處理하느냐에 따라 韓國林政의 成敗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最近 增加되었든 虫害被害地는 樹種更新이 되었으나 大部分의 소나무林이 入山禁止와 落葉採取禁止라는 消極的 施策에서 맴돌고 있다.

이들 소나무林의 大部分을 表土가 流失된 狀態에서 生長狀態가 不良하거나 營養狀態가 惡化되여 마치 肺病初期 狀態와 洽似하다.

이狀態에서 어떻게 處方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크게 問題되는 것이 「赤松亡國論」이다 林業技術者나 大部分의 專門家들도 이를 믿거나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듯하다.

벌레에 弱하고 生長이 좋지 않으니 다른 樹種을 導入해서라도 樹種을 更新하여야 한다는 代案들이다.

이것은 極히 危險스런 思考方式이다. 소나무는 우리 自生樹種으로 土質에 알맞을 뿐아니라 生長이나 材質이 다른 나무에 決코 뒤지지 않으며 病虫害에도 强한 나무로서 우리나라의 代表的인 經濟樹種의 하나이다.

樹幹이 곧게 자라고 있는 江原道의 소나무林을 보게 되면 理解가 갈것이다.

다음은 病虫害問題이다. 森林이 울창하게 우거져 많은 植生이 有機的인 植物社會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病虫害被害는 거이 눈에 띄지 않는다. 森林이 荒廢된 狀態下에서는 어떤 樹種이건 耐虫性은 갈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것」과 「必要한 것」 選擇의 區分이 分明하여야 하겠다. 「좋은것」이라 하여 소나무 伐採跡地에 外國產 苗木을 심었을 경우 소나무보다도 훨씬 많은 問題點을 낳게 될것이며 現存소나무林과 같은 狀態로 만들자면 數十年이 걸릴것이며 莫大한 財源이 所要될 것이다.

소나무는 우리의 現實에서 絕對로 必要한 數國 植物이다. 또하나의 理由로서 앞으로 急增되는 工業原料의 經濟的生產이라는 面에서 볼때 소나무林은 母樹몇구루만을 남기면 自然히 稚樹林이 形成되여 자라게 되고 利用期의 除伐과 間伐을 하여 손쉽게 收獲할 수 있고 林質이 좋아 用度가 매우 넓다.

앞으로 닥아오는 人力不足現象에서 볼때 다른 樹種은 採種—播種—床替—造林地地帶—造林 5—6年間의 풀깍기—除伐—間伐等 많은 人力을 必要로 한다.

여기에서 現存 소나무林을 가꾸는 가장 合理的인 方法은 現存 소나무의 密生된 것 만을 除去하고 肥料木(오리나무 자귀나무 싸리類)을 混植하는 일이다.

肥料木을 混植하여 3—4年 지나게되면 소나무의 同春現象이 일어나 잎의 색이 黃色에서 綠色으로 變하게 되고 놀라울 程度로 生長이 促進될 것이다.

結論的으로 소나무를 잘 가꾸느냐 못가꾸느냐에 우리나라 林政의 成敗가 달려있다고 보며 이는 國家經濟와 社會福祉向上에도 크게 寄與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多目的林業經營」을 成功시키려면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 林道網의 整備이다.

特히 우리나라는 山岳林이 많기 때문에 國土保全과 經濟的인 問題가 있으나 一般道路와 같이 點과 點을 連結하는 最短距離로서의 旣念이 아닌 等高線에 따른 曲線道路를 軌工法에 依해서 전林地를 通過할 수 있게 架設하므로서 林道

開設費도 적게 들고 土砂流出等 國土보전상의 被害도 最小限으로 주릴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森林의 환경보전적 機能이 强調되고 있는 時點에서 水源涵養 國土保全等의 公益的 效用을 評價하여 受益者가 補償할 수 있는 法的 制度가 마련되어야 하며 現行山林法도 現實에 맞게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3) 開發綜合計劃과 自然保護

앞으로 展開될 國土綜合開發計劃에서 다루어야 할 自然保護의 基本目標는 長期的 觀點에서 人間과 自然과의 調和를 꾀하는데 있다. 土地의 立地條件을 無視한 人間의 行爲가 自然을 破壞하고 자연환경을 惡化시킨 主原因이였기 때문에 土地의 立地條件에 順應하고 人間行爲를 制限하여 自然환경보전을 目的으로 한 土地利用計劃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第四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에서 社會開發部門이 基本目標로 登場되어 高度經濟成長의 安定化를 위한 전 國土의 福祉圈化에 重點을 두게 된 것은 참으로 多幸스러운 일이다. 여기에서 1980年代의 國土開發政策目標를 내세우고 있는 國土가 지닌 成長潛在力의 極大化를 꾀하는 過程에서 從來와 같은 短期的이고 物理的인 開發計劃에 치우쳐서는 決코 아니될 것이다.

人間의 잘못으로 破壞된 自然의 復元(Restoration)에는 數十年이나 數百年을 要할뿐 아니라 他生物社會에 미치는 影響이 얼마後에 우리人間에게 되돌아 오기 때문에 開發과 保全의 調和는 매우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都市化와 産業化가 加速化됨에 따라 土地의 量的需要의 增大뿐 아니라 土地利用의 質的變化가 따르게 된다.

人口增加에 따른 宅地需要의 誘發 工業團地의 新規需要發生 食糧增産을 위한 農耕地擴大 3次産業用土地의 相對的增大와 國民의 生活水準 向上에 따른 餘暇및 慰樂空間의 需要가 繼續 늘어날 것으로 보아 現在國土面積의 66%를 占하고 있는 山林面積이 2,000年代에 가서 50%線으로 減少될 것이 豫想된다.

國民 1人當山林面積이 0.28ha에서 0.10ha로 急減되어야 하는 與件下에서 國土의 보전과 開發의 均衡을 維持하려면 科學的인 國土管理가 무엇보다도 時急한 課題이다. 이 問題에 있어서는 전 國土의 綜合的인 精密調査를 實施하여 土地의 性格과 能力을 類別하여 永久的인 資源으로서의 土地利用區分을 하여 土地條件에 맞는 內容과 適正 規模의 開發行爲만을 許容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自然資源의 保護와 人間의 레크레이숀的 利用을 위해 指定保護되고 있는 國立公園制度에 있어서도 過度利用으로 荒廢되고 있기 때문에 適正收容限界를 規定하여야 한다.

特定地域이 갖는 自然的特性을 分析하여 그 地域의 生態的容量과 形態的容量을 決定하고 人間의 利用空間과 絕對的인 保存空間으로 나누고 人間의 利用空間은 다시 施設標準空間과 人間標準空間으로 區分하여 前者의 境遇 固定施設空間과 移動施設空間으로 後者는 肉體的空間과 精神的 空間으로 細分하여 利用空間에 따른 人間의 適正收容能力을 判斷하여야 할 것으로 그 基準은 自然植生의 回復能力範圍內에서 嚴格히 制限되어야 할 것이며 國立公園 相互間의 連結은 「自然步道公園」의 槪念으로 맺어주는 問題도 愼重하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

또한 水資源의 보전과 國土保安的 諸機能의 維持를 위해 生態系로서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規模의 自然保護區域을 전국에 고루 設定하여 積極 保護하고 보전(Conservation)의 立場을 主軸으로한 「森林의 多目的利用」을 果敢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1974年 13個地域에 設定한 바 있는 開發制限區域(國土面積의 5.1%)에 對한 都市近郊農業地域이나 都市圈의 餘暇空間으로 一部 活用하는 方案도 조심스럽게 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絕對農地 (現在 60%)의 追加指定으로 生産綠地를 確保하여야 한다.

國土空間의 絕對的인 擴張이라는 側面에서 從來 實施되어온 小規模 干拓事業에서 大規模干拓事業으로 轉換하여야 하며 四大江流域의 遊休地開發可能面積 336km²의 農耕地化를 國土保全的 側面에서 推進하여 災害를 豫防하고 生産綠地로 活用하도록 한다.

끝으로 都市的榮光과 農村의 田園的浪漫의 均

衡있는 發展을 圖謀하고 安全性과 快適性等 人間尊重의 觀點에서 都市와 聚落地區의 生活環境을 再整備하고 産業의 適正立地化와 土地利用相互間의 調和를 꾀하므로서 自然과 人間이 融和되 均衡있는 福祉社會를 實現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올바른 自然觀을 確立하기 위하여 生物社會의 本質的 諸特性을 考察하고 自然保護의 現況과 問題點 그리고 先進諸國의 動向을 分析하여 自然保護 政策의 基本方向과 當面目標를 設定하였으며 開發과 보전의 均衡있는 國土의 綜合開發을 推進하기 위한 生態學的 接近方法等을 論議하였다.

本文에서 言及한 內容을 土台로 韓國의 自然保護政策의 基本目標를 要約하고 當面課題를 中心으로 몇가지 事項을 建議하고자 한다.

첫째, 自然保護政策의 基本目標設定

制限된 自然資源을 科學的으로 保護管理하여 恒續的으로 利用하고 開發과 保全이 均衡을 維持하여 生活환경의 質을 向上시키는데 있다.

둘째, 올바른 自然觀의 確立과 技術開發普及 自然保護에 關한 啓蒙 및 敎育制度를 强化(幼年期의 敎育强化가 특히 重要함)하고 保全과 開發에 따른 技術開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專擔硏究機關을 設置한다.

셋째, 國土空間의 均衡있는 開發과 資源의 積極保全 資源의 國土空間을 科學的으로 綜合分析하여 開發과 保全의 均衡을 바탕으로 한 國土利用計劃을 樹立하여 開發地域은 事前環境評價制와 環境開發稅制를 新設한다.

保全地域은 目的 및 機能別로 保護 및 管理規程을 마련하고 國立公園의 過密利用對策을 세우고 公園綠地의 營業 및 利用者費用負擔制와 公益的 森林效用의 受益者補償制度를 아울러 마련할 것.

넷째, 自然環境法制의 整備强化

自然環境保全法과 都市綠地保全法 工業立地法等을 制定하고 國土利用管理法, 山林法 都市計劃法, 公園法, 公害防止法, 自然保護와 關聯되는 法制를 整備强化할 것.

다섯째, 民間自然保護運動의 展開

自然保護運動의 生活化를 위해 英國의 「내쇼날트러스트」와 같은 自然保護運動을 展開하고 내집 마을의 順으로 全國民이 參與하도록 새마을事業의 一環으로 推進할 것.

여섯째, 多目的 利用을 前提로 한 林業經營의 科學化 國土面積의 60%以上을 占하고 있으며 國土保全과 社會福祉的 公益機能을 함께 지니고 있을뿐 아니라 再生될 수 있는 資源으로서의 重要性에 비추어 林業經營의 科學化를 促進할 것.

參 考 文 獻

1. 韓國林政史　池鏞夏 明秀社　1964
2. 環境論叢 1—1　서울大學校環境大學院 1974
3. 未來　鄭範模　1975
4. 社會開發計劃論　金永燮 法文社　1975
5. 韓國經濟 第9輯　三星文化財團　1976
6. 國土利用現況分析　國土建設綜合計劃審議會 1977
7. 世界都市뉴스(下卷)　서울特別市　1977
8. 自然保護 20號　韓國自然保全協會　1977
9. The Quality of the urban Enviroment harvey S. Perloff 1969
10. Design with Nature IAM L.Mchad　1971
11. 公園綠地 Vo,30—1 日本公園綠地協會 1969
12. 公園綠地 Vo. 33—3. 4　〃　1972
13. 國立公園 Vo. 2732　日本國立公園協會 1972
14. 國立公園 Vo. 277　日本國立公園協會 1972
15. 日本列島改造論　田中南榮　1972
16. 植物と人間　宮脇昭 日本放送出版協會 1972
17. 生態學カラミタ自然　吉良竜夫　河出書房新社　1972
18. 環境計劃と設計　菅キヨシ　誠文堂新興社 1974
19. 國立公園 Vo. 311　日本國立公園協會　1975
20. 地域開發 Vo. 144 日本地域開發センタ 1976